

2021년 제4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203-5(업무시설(사무소), 근린생활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심의일자	2021.4.23.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한국토지신탁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
	지 번	203-5	관련지번
	대지면적	12,365.22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준주거지역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6,098.27㎡	건폐율 49.32 % 층수 지하 : -2층 / 지상 : 20층
	주 용 도	업무시설(사무소), 근린생활시설	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 동수 2동
	최고높이	93.35m	용적률 399.82% 연면적 합계 69,486.76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SRC기둥 주철근에 연결철근 추가 및 기둥 스테드 볼트 산정근거 (각 층별 기둥 산정근거, 스테드 높이 등 누락 등) 제시할 것.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	
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1년 제4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20-4 외 7필지(공동주택(아파트), 근린생활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심의일자	2021.4.23.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송도센트럴1지구지역주택조합 외 1인		
대지현황	대지위치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
	지 번	20-4	관련지번 20-5, 20-6, 20-7, 20-8, 20-9, 20-10, 20-11
	대지면적	12,293.3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준주거지역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6,139.71㎡	건폐율 49.94 % 층수 지하 : -3층 / 지상 : 10층
	주 용 도	공동주택	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 동수 8동
	최고높이	37.5m	용적률 279.03% 연면적 합계 62,395.35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철근 재료강도 SD600 사용한 구조부재를 임의적으로 $f_y=550\text{MPa}$ 적용하여 철근간격 및 피복두께 제한사항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상의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.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	
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1년 제4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3호 안건: 중구 중산동 1871-1(공동주택(아파트))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심의일자	2021.4.23.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영종하늘도시2차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		
	지 번	1871-1	관련지번
	대지면적	89,548.0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5,404.28㎡	건폐율 17.20 % 층수 지하 : -2층 / 지상 : 29층
	주 용 도	공동주택	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 동수 16동
	최고높이	82.75m	용적률 194.72% 연면적 합계 235,451.34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주동 E.V PIT 강재집수정 적용시 기초 OPEN에 따른 적용이 구조 해석에 누락부가 있으므로 동별 재확인후 시공 ○ RC, PC 혼용되어 있으므로, 시공시 원설계자와 원활한 협력 요망 ○ 철근 재료강도 SD600 사용한 구조부재를 임의적으로 fy=550MPa 적용하여 철근간격 및 피복두께 제한사항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상의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할 것 ○ PHC파일에 대해서 영구하중에 대한 허용지지력 및 침하량에 대한 구조해석모델에 대한 검토할 것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	
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1년 제4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4호 안건: 서구 청라동 152-16 외 1필지(업무시설(오피스텔), 근린생활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1.4.23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가림이앤씨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				
	지 번	152-16	관련지번	152-17	
	대지면적	2,796.6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일반상업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633.47㎡	건폐율	58.41 %	층수 지하 : -3층 / 지상 : 10층
	주 용 도	업무시설(오피스텔), 근린생활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 구조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38.30m	용적률	397.17%	연면적 합계 17,997.77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전이보 설계시 상부벽체 편심배치에 따른 비트림 모멘트 고려시 전이보 외부 H00P가 비틀림에 저항에 유효함. 모든 편심 전이보에 대해서 재검토 바람 ○ 철근 재료강도 SD600 사용한 구조부재 중 기동 부재는 첨부계산 근거에서 Atr 오류 및 (c+Ktr/db > 2.5 조건을 만족하지 못함. 모든 기동부재에 대하여 철근간격 및 피복두께 제한사항 만족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(부재리스트와 검토근거 내용이 맞지않음- 연결철근 개수 등이 맞지않음.)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1년 제4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5호 안건: 서구 청라동 153-2(업무시설(오피스텔), 근린생활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	2021.4.23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정종범 외 3인	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					
	지 번	153-2	관련지번	153-2		
	대지면적	2,001.2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일반상업지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148.68㎡	건폐율	57.40 %	층수 지하 : -3층 / 지상 : 15층	
	주 용 도	업무시설(오피스텔), 근린생활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 구조	건축물 동수 1동	
	최고높이	48.80m	용적률	662.82%	연면적 합계 18,331.39㎡	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철근 재료강도 SD600 사용한 구조부재를 임의적으로 fy=550MPa 적용하여 철근간격 및 피복두께 제한사항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상의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 바람. ○ 전이보 설계시 상부벽체 편심배치에 따른 비틀림 모멘트 고려시 전이보 외부 H00P가 비틀림에 저항에 유효함. 모든 편심 전이보에 대해서 재검토 바람	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	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O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1년 제4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6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21-16 외 5필지(공동주택(아파트), 근린생활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1.4.23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21-16	관련지번	21-17, 18, 19, 20, 21	
	대지면적	6,628.0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준주거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3,311.84㎡	건폐율	49.97%	층수 지하 : -2층 / 지상 : 10층
	주 용 도	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 구조	건축물 동수
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